

2024년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점포환경개선 지원 참여자 모집공고

시설 노후로 경쟁력이 저하된 도내 소상공인에게 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2024년 점포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2월 1일

충청북도지사

재단법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점포환경개선 지원
- 사업목적 : 소상공인 대상 점포환경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개업일로부터 7년 이상인 도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공급가액의 최대 80%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원(200만원~400만원)
- 접수기간 : 2024년 2월 1일(목) ~ 3월 4일(월) 17: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개업일로부터 7년 이상인 도내 소상공인
 ※2017.2.1. 이후 개업한 창업기업¹⁾은 신청불가
- 지원규모 : 점포환경개선 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지원
- 지원규모 : 34명, 점포환경개선 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지원

지원분야	세부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한도
옥외간판	벽면 이용 간판(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21개소	최대 2백만원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 공사 (점포 내 도배, 도색, 바닥, 조명, 덕트 등)	13개소	최대 4백만원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비용의 80% 환경개선비 지원(자부담 20%), 초과금 본인 부담

※ 1인 1개 지원분야 신청 가능, 선정 후 지원분야 변경 불가능

○ 지원분야

1) 옥외간판

-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원 가능

지원가능 옥외간판 종류	예시
1. 벽면 이용 간판(가로형간판) 단, 간판 내부 조명만 교체는 지원 불가	<p>The diagram shows a multi-story building facade. At the top, an arrow points to a sign on the roof labeled '옥상간판'. On the right side, an arrow points to a sign that projects from the building's facade labeled '돌출간판'. At the bottom, an arrow points to a horizontal sign attached to the building's facade labeled '가로형간판'.</p>
2. 돌출간판	
3. 옥상간판	

※ 옥외간판 분야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따름

2) 인테리어

- 점포 내 도배, 도색, 바닥, 조명, 덕트공사 등
- 전기, 전자, 기계,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 지원불가

1) 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중소기업창업법 제1장 2조)

□ 신청접수

- 모집기간 : 2024년 2월 1일(목) ~ 3월 4일(월) 17: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날인 또는 서명 후 원본 제출)
- 제출서류(신청 시)

번호	제출서류	유의사항	비고
필수	1 지원신청서	원본제출	[서식1]
	2 추진계획서	-점포 내·외부 사진 각 1장 -점포환경개선 할 부분 최소 2장	[서식2-1] [서식2-2]
	3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원본제출	[서식3]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1년(2023.1.1.~2023.12.31.) ※면세사업자의 경우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홈택스
	6 지방세 납세증명서	-개인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 :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	정부24, 주민센터
	7 견적서	-시공(제작) 견적서 1개 이상 ~ 2개 이하 제출 -충북도 내 시공(제작)업체 선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 필수 -직인, 구체적인 품목, 수량, 단가 등 기재	
선택	8 사회적 취약계층 확인서류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만 65세이상자: 주민등록등본(공고일기준)	대표자 가점 최대 10점
	9 주민등록등본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중인 자) -주민등록등본 상 도내 거주 미성년자 -미성년 : 만19세 미만인 자	

○ 제외대상(신청제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별지]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휴·폐업, 사업자 무등록자, 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최근 3년 이내 유사 지원사업 수혜업체(도·시·군 사업)

□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절차

- 정량평가(1차)

· 정량평가 항목

구분	항목 및 배점	세부 심사평가 항목				
1차 정량평가 (50점)	사업기간 (30점)	20년 이상 30	15년~20년 미만 25	12년~15년 미만 20	10년~12년 미만 15	7년~10년 미만 10
	23년도 매출액 (20점)	5천만원 미만 20	5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 17	1억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14	1억5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 11	2억원 이상 8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2차 정성평가 응시자격 부여

· 가점 항목 : 최대 10점까지 인정

구분	항목 및 배점	세부 심사평가 항목
가점 (최대10점)	교육 및 컨설팅 참여자 (5점)	- 2021년 ~ 2023년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한 교육, 컨설팅 참여자
	사회적 취약계층 (10점)	-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만 65세이상자: 주민등록등본(공고일기준)
	다자녀가구 (10점)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중인 자) - 주민등록등본 상 도내 거주 미성년자 - 미성년 : 만19세 미만인 자

· 평가방법 : 제출서류 기반으로 정량점수 산출

· 선정규모 : 분야별 지원규모의 1.5배 선정

- 정성평가(2차) : 외부 선정평가위원 3인 구성하여 서면 평가

구분	항목 및 배점	세부 심사평가 항목
2차 정성평가 (50점)	사업계획(20)	- 사업계획 작성의 충실성 - 점포환경개선 의지 및 지원동기의 명확성 - 전문성(기술력, 동업종 경력 등)
	사업아이템 및 성장가능성(30)	- 사업아이템의 참신성 및 독창성 - 점포환경개선을 통한 성장가능성 - 파급효과

○ 선정절차

- 지원 분야별 선정평가 진행(옥외간판, 인테리어)
- 1 ~ 2차 평가점수 및 가점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중도포기, 선정취소 발생 등을 대비하여 지원분야별 예비자 10명 선정
- 동점자 발생시 ① 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자 ②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 ③ 가점 점수가 높은 자 ④ 연장자순으로 선정

○ 선정통보 : 문자 및 이메일 통보

○ 추가서류 제출

- 선정통보 후 추가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미달인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선정
- 제출서류(선정 후, 최종선정자만 제출)

번호	제출서류	유의사항	비고
선정후 제출서류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4대보험 가입자 :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2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공고일 이후 발급문서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홈택스
	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주업종 확인필요 시 추가 제출	홈택스
	4 시공(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신청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 보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업체	
	6 옥외광고업등록증	옥외광고물 시공(제작)업체 등록증 제출	

○ 선정취소

- 선정통지 이후 소상공인이 충북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선정통지 이후 사업장을 폐업 및 휴업한 경우
- 신청서류 허위작성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선정통보 이전에 과제수행을 진행하여 시공한 경우
- 사전변경승인 없이 수행업체 및 과제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선정 이후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경우
- 과제 부실 등 충북기업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변경 · 포기

- 신청한 지원금액보다 실제 소요된 비용이 하향된 경우 감액 지원 가능하나, 상향된 경우에는 변동되지 않음

- 선정 후 지원 분야 변경 불가
- 지원 포기 시, 포기신청서 제출 또는 포기신청서 제출 요청 후 5일 이내 회신하지 않으면 자동 포기됨

□ 지원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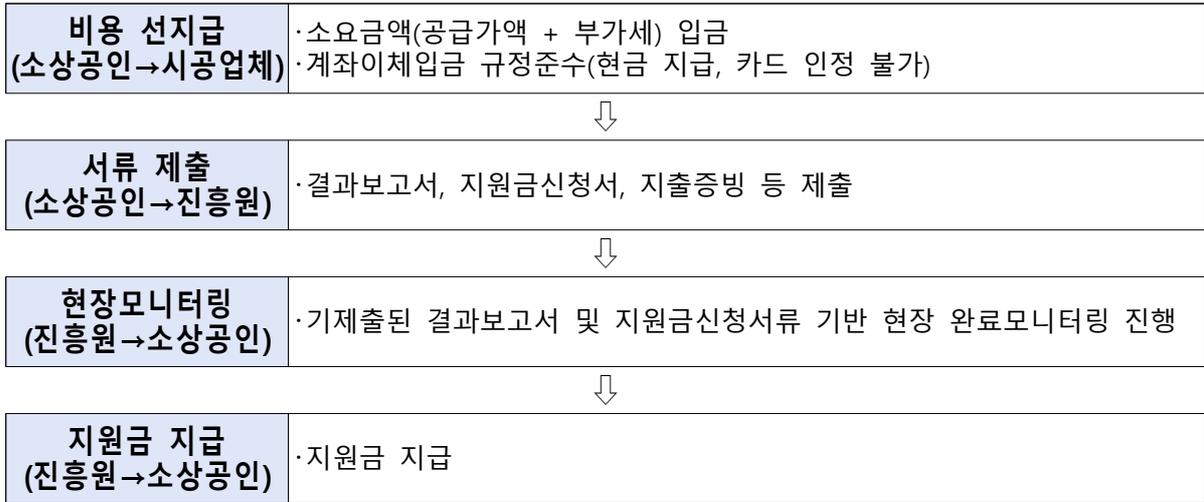
○ 지원금신청 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비고
1	지원금 신청서	- 원본 제출	공통
2	완료보고서	- 시공 전·후 사진 3장 이상	
3	계좌이체 확인 서류	- 계좌이체확인증 - 시공업체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 시공업체 통장사본	
4	소상공인 통장사본	- 지원금 수령용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통장사본 제출)	
5	계약서	- 공통: 계약날인, 계약기간,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내용, 하자보증이행(1년) -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등 표시신고증명서	해당시

○ 시공업체 선정 및 지원금 지급기준

- 시공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상 지원분야와 관련된 업태·종목의 사업자여야 함
- 시공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장이어야 함
- 시공업체는 도내 업체를 선정(해당 시·군의 업체 우선 선정 권고)
- 옥외간판 제작 시 옥외광고업등록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
- 참여자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시공업체는 선정 불가
- 지원금은 참여자가 시공업체로 선지급한 후, 참여자에게 지급함
-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카드결제는 불가함
-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업체 변경 시, 사전 승인 필요
- 시공업체 당 사업참여는 최대 2회로 제한(참여자 평가고득점 순으로 우선 선택)

○ 지원금 지급 절차



□ 모집일정 및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4년 2월 1일(목) ~ 3월 4일(월) 17: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점포환경개선 사업 담당자 앞
- 문의처 : 점포환경개선 지원 사업담당자 (☎ 043-230-9765)